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03
----------	-----

2024. 10. 14.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9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광심 의원 )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방역단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주민방역단 신설 및 임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항)

나. 주민방역단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이 안건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방역단 신설, 임무 명확화,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김광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1조<sup>1)</sup>에 따르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하거나 소독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함.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업소, 공연장 등의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임.
-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소독을 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속하지 않지만, 감염병 특성상 전파력이 뛰어나도록 피해 규모가 커지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sup>2)</sup>를 통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역에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해마다 기온이 상승하여 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이나 동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0호]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질병관리청, 2024. 5.,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p.149.

들의 연중 활동기간이 길어져서 방제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주민자율 방역단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왔음.

**[붙임 1]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역 활동 현황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가 구성한 새마을운동조직의 일부인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자율방역 활동을 하여 자율방역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새마을방역봉사대의 경우 새마을사업이 주요 사업이고, 방역 활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부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과 자율방역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과 자율방역단 비교 >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역단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li> <li>•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예방법</li> <li>•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li> </ul>
주요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운동 계승과 발전</li> <li>• 새마을운동 의식 향상 교육 및 캠페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li> <li>•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li> </ul>
부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안전, 사회공동체 만들기</li> <li>• 나무심기운동, 양재천 정화,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방역 활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활동</li> </ul>

※ 새마을운동조직의 경우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음.

**나. 검토 내용**

- **현행 제22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할 자율방역단을 두는 근거 조항임.
- **안 제22조제1항**은 현행 제22조제1항에 기존의 자율방역단 외에 주민방역단을 추가로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는 기존의 ‘자율방역단’ 과 신설되는 ‘주민방역단’ 이 각각 존재하게 됨.
- 자율방역단은 i)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구역 내에서 조직·구성되고, ii)지역별 특

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며, iii)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이 주요 임무이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자율방역단과 신설될 주민방역단은 실질적인 구성원만 다를 뿐, 입법 체계상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임.
-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 사업>에 따른 자율방역단 활용 권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율방역단’ 현황, △자율방역단 운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입법 형식적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역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ii)실체적 측면에서는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대표를 선정하여 자율방역단을 구성하도록 조문을 다듬되, 그 틀 안에서 하위 규정이나 지침을 통하여 운영을 달리 하는 등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상태로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이 안 제22조제2항에서 자율방역단의 활동에 홍보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구성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2조(자율방역단)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할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 ① _____ _____ 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 _____.	제22조(자율방역단)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확인한 결과, 자율방역단은 i)구청장이 단원을 그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하고, ii)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거나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원으로서 임무를 맡을 뿐이고, iii)주요 임무인 방역 활동 외에 홍보 등 지역친화적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수활동도 하게 됨. 운영 및 정산,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형식에 부합하므로, 설치 목적은 포괄적으로 규정

하되, 서술어 중복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다 명료한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안 제22조제2항**은 자율방역단과 주민방역단의 임무를 규정한 것임. 이 조문에 따르면 자율방역단과 주민방역단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임.
  - 주민방역단을 별도로 설치할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앞서 설명한대로 조문은 현행과 같이 자율방역단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운영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함.
  - 입법 형식 중 서술어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 소독, 구제조치 등 ‘소독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구청장인데, 제51조제4항의 단서에 따르면 관리업자가 소독 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구역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소독 의무의 주체인 구청장이 의무로서 이행하는 부분을 관리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자율방역단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조문 순서의 경우 원론적으로 강제성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제처는 법령 입안 기준에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므로, 자율방역단의 임무를 서술할 때 그 중요도 순으로 주요 임무를 앞의 호에서 먼저 정하고, 부수 활동을 뒤의 호에서 나중에 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임.
  - 이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 사업>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자율방역단의 주요 임무’는 ‘홍보’가 아니라 ‘방역 활동’이어야 할 것이므로 각 호의 순서를 중요도 순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보면 약품 등을 사용하는 방역 활동, 감염병 매개 해충 등의 구제조치, 해충 등의 서식지 감시를 포함한 주요 업무, 방역 활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의 부수 활동이기 때문임.
  - 소독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방역 활동’의 경우 자율방역단 본연의 주요 임무이므로 제1호에 두고,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서식지 감사는

고·제거를 제2호에 두고, 현행 제22조제3항제3호에 사업계획서 및 활동내역서에 기술하게 되어 있던 방역 취약지 분석은 단원이 취약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분석까지 이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22조제2항제3호**에 두되 동향 파악 및 보고 수준에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2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자율방역단이 앞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수 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임. 홍보에 초점을 둔 방역홍보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 발대식 목적에도 드러나므로 홍보는 부수 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됨.
- **안 제22조제2항제5호**의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율방역단 활동의 목적을 사업 추진으로 한정하는 것은 자율방역단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구청장의 방역 의무 이행, 사업 운영 등에 자율방역단이 참여하는 것, 자율방역단이 자체 임무를 수행하는데 구청장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므로, 자율방역단의 그 밖의 임무인지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 자율방역단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주요 임무와 부수 활동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임무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2조(자율방역단) ① (생 략)	제22조(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 ① (생 략)	제22조(자율방역단)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b>홍보 활동</b>	②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b>방역 활동</b>

	<u>2. 해충 서식지 감시 및 방역 활동</u> <u>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2.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서식지 감시·신고·제거</u> <u>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u> <u>4.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활동</u> <u>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u>
--	---	--

- 안 제22조제3항은 현행 제2항과 같이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2조제4항은 현행 운영 중인 자율방역단과 달리 주민방역단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우선 입법 형식상 주민방역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음. 여기에서 제3항과 제4항의 내용만 비교하면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과 주민방역단에 대한 지원은 표현만 약간 달리 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방역 등 주요 임무 수행, 부수 활동인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 임. 즉, 지원받는 대상만 다를 뿐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임.
- 제출된 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자율방역단이든 주민방역단이든 지원을 받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임무를 위한 경비라고 쓰여져 있어 예산의 활동비 편성목이 인지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음. 이러한 부분은 입법 형식에 따른 규정과 실질적인 예산 집행 간의 긴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편성목을 고려하여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향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해당 호에 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조문 순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문 순서와 중요도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제3항의 위치에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정산 보고와 관련한 의무 규정을 기술하고, 그 다음 제4항의 위치에 자율방역단 지원에 관한 규정이 순서상 바람직하다고 보임.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제4항에 해당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원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2조(자율방역단) ①(생 략)</p> <p>&lt;신 설&gt;</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 방역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약품</p> <p>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p> <p>&lt;신 설&gt;</p>	<p>제22조(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p> <p>①(생 략)</p> <p>②(생 략)</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b>자율 방역단</b>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약품</p> <p>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p> <p>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b>주민 방역단</b>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명시된 지원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을 위한 <u>물품 및 경비</u></p> <p>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2조(자율방역단) ①(생 략)</p> <p>②(생 략)</p> <p>③(생 략)</p> <p>④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u></p> <p>1. <u>활동비</u></p> <p>2. <u>의료·방역 물품</u></p> <p>3. <u>상해보험가입비</u></p> <p>4. <u>작업복 구입비</u></p> <p>5. <u>감염병 교육 및 기술이전</u></p> <p>6. <u>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 만일 제3항과 제4항으로 지원 내용을 구분한 취지가 중복 지원 때문이라면, 파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

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고 기술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음. 이 때 법령등이라는 표현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법령(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과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도록 한 용어 정의에 따름.

- 안 제22조제5항은 자율방역단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정산보고 의무 사항에 관한 것임.
  - 제출된 조례안에는 자율방역단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 기술되어 있고, 주민방역단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없음. ‘지역별 방역 활동’이라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율방역단은 의무와 지원 간 균형이 존재하지만, 주민방역단은 지원만 받고 의무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이 규정을 둔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임.
  - 다만, 위에 제시한 수정안을 반영할 경우 i)자율방역단이라는 범주 내에서 주민들이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ii)임무를 수행하고 운영 관련 정산보고를 하도록 해서, iii)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구청장의 관리 범위 내에서 자율방역단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 조문 간 중요도 및 순서의 경우 안 제22조제5항에 기술된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정산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제3항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정산보고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2조(자율방역단) ① (생략)  <u>&lt;신설&gt;</u> ② (생략)	제22조(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2조(자율방역단) ① (생략)  ② (생략) ③ <u>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사업계획서 2. 활동내역서 3. 추진실적 보고서

<p>&lt;신 설&gt;</p> <p>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④ (생 략)</p> <p>⑤ 제3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p> <p>2.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p> <p>3. 강남구 내 방역 취약지 분석 및 보고</p>	<p>4. 정산내역서</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	--	---

- ‘사업계획서’의 경우 기존과 같이 매년 해당연도 자율방역단 발대식 이후 사업 개시 전에 운영 목표, 대상 지역 및 인원 수 등 단위 모집 규모, 활동 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활동계획서’는 기존의 용어가 미비한 점이 있어 ‘활동내역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단위들이 활동일시, 활동구역, 활동내용 등을 기재하여 활동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수기로 제출하는 것임.
- ‘추진실적 보고서’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에 추가한 사항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위의 활동계획서는 활동 중에 각자 기재하는 것이고, 그 활동계획서가 활동 종료시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리담당자가 추진성과가 어떠한지를 기술하는 보고서가 추진실적 보고서임.
- ‘정산내역서’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을 구청장이 지원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이미 강남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부서에서 실무상 처리해 온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행 제22조제3항**의 내용 중 방역소독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는 사업계획서 또는 활동내역서에 기술하여야 할 특정한 활동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약품의 특성 때문에 ‘상시 주의 및 관리’ 하여야 할 전제 사항임.
- 그러므로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는 각 단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약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약품관리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2조(자율방역단) ① (생 략)	제22조(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	제22조(자율방역단) ① (생 략)
<신 설>	①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④ (생 략)
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의 관리·보관·사용에 <b>주의</b>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생 략)	1. (생 략)	1.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
2. 방역소독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방역소독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생 략)	3. 방역약품 표시 부착

**다. 종합 의견**

-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한 방역 강화 효과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공공방역과 민간자율방역의 병행 실시로 더 촘촘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고 보임. 자율방역단을 운영할 경우 i)공공방역으로는 연중 관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살필 수 있고, ii)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iii)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고 생각됨.

○ 입법 취지를 고려한 미비점 보완의 필요성

- 입법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현행 자율방역단과 이 조례안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방역단은 둘 다 ‘방역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단원 구성이 다르다는 차이 외에 기능과 역할에는 명확한 차이가 없고, 구청장이 지원하는 항목도 유사하여 중복 운영의 소지가 있어 보임.
- 조례안에 따르면 자율방역단은 사업계획서와 활동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주민방역단에게는 이 의무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 역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보완하여야 할 미비점이라고 생각됨.
-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운영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므로 앞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 향후 자율방역단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계획서를 고려하고, 이와 같이 집행하는 한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규정 정비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됨.

[붙임 2] 추진 예정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 조례안 일부 규정의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자율방역단 운영은 관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방역 취약지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이므로, 강제적으로 단원 모집을 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자율방역단이 구청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 설명하였고, 그 외 실질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책임부서인 질병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나 지침 등 실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15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 3. (생략)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 9. (생략)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 17. (생략)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질병관리과, 2024. 9. 기준)

구 분	조 례	내 용	지 원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원봉사	물품 또는 비용 지급
금천구, 마포구,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원봉사	교통비 또는 급량비 지급
인천시 계양구, 동구,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주민자율방역단	약품 및 장비 지원, 경비 지원
부산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보건과)	주민방역단 (제정 후 미운영)	경비 지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작업복 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방역약품 및 물품 등)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보건과)	주민자율방역단	예산 지원 (약품 및 장비, 경비 지원)
부산시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주민자율방역단	경비 지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작업복 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방역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부산 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주민자율방역단	비용 지원 (방역소독 약품비, 활동보상금 등)
부산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주민자율방역단	예산 지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 방역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부산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주민자율방역단	예산 지원 (활동보상금 등 비용)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마을방역단	경비 지원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생활방역요원	비용 지원 (교통비 및 식비, 방역 약품비, 장비 등)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율방역단	경비 지원

## □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 조례명 :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3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 금천구, 마포구, 구로구

- 조례명 :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4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 인천광역시시 계양구, 동구, 중구

- 조례명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내 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
2. 해충 출현에 따른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에 따른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제6조(방역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부산광역시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 □ 부산광역시 진구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방역소독 약품비, 활동보상금 등의 비용 일부를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구입비 등

##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활동보상금 등의 비용 일부를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 □ 시흥시

- 조례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9조의2(마을방역단 구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동에 마을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마을방역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제19조의3(마을방역단 운영 등) ① 시장은 마을방역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마을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의 방역활동
2. 제1항의 마을방역단 운영 계획에 따른 방역활동
3. 제7조에 따른 감염병비상대책반 구성 시 방역활동 지원

③ 마을방역단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방역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서식의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마을방역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 □ 고양시

○ 조례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0조의2(생활방역 요원 선임 등)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방역 요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생활방역 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의 방역 활동
2. 생활 방역 계획에 따른 방역 활동
3. 제8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운영 시 방역활동 지원

③ 생활방역 요원은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원활한 생활방역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1. 생활방역 활동을 위한 교통비 및 식비
2. 생활방역을 위한 약품비, 소모성 방역장비 등

## □ 사천시

○ 조례명 :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7조(자율방역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일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며,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 ⑤ 시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붙임 2] 추진 예정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질병관리과, 2024. 9. 기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 보건소 질병관리과 ]

### 주민 참여 「모기 제로 서포터즈」 사업

2025년 신규사업 예정 (2024. 8. 29.)

#### 현황 및 필요성

- 도심지역 모기 유충 서식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방제 필요
- 주민참여 방역사업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쌍방향 효율적 해충방제 필요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참여 증진으로 지역방역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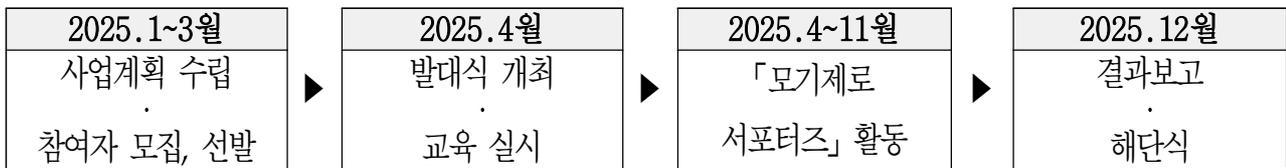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추진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 구민
- 주요내용
  - 주민참여 방역 사업 「모기 제로 서포터즈」 (가칭) 모집
    - ▶ 구 성 : 100명(행정구역당 세대수에 따른 균등 선발)
    - ▶ 선 발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거주민 중 해당지역 대표 선발
      - 거주민 중 대표 선정으로 모기 유충구제제 투입 및 모기 서식환경 제거 등 책임감 고취, 주민 홍보 효과
  - 주민참여 방역 사업 「모기 제로 서포터즈」 (가칭) 운영
    - ▶ 활동기간 : 1년(임기 후 재신청 가능)
      - 기 간 : '25. 4 ~ 11월(월 2회/1회 4시간)
    - ▶ 역 할
      - 모기유충 서식지(주택 변기 등) 유충구제제 투입
      - 해충유인살충기 등 방역기기 운영상태 점검

- 지역사회 모기 서식지(고인물 등) 감시 및 제거·신고
- 해충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등 캠페인 병행

##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5. 1 ~ 2월
- 모기제로 서포터즈 참여자 모집·선발 : '25. 2 ~ 3월
- 모기제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25. 4월
- 모기제로 서포터즈 활동 : '25. 4 ~ 11월
- 결과보고 및 해단식 : '25. 12월



## □ 기대효과

- 지역 주민 참여로 주기적 모기 유충 구제 및 해충 방제기기 적정 활용·관리
- 모기 구제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민관 공동 방역 활동 활성화

## □ 소요예산 : 금40,000천원(구비 100%)

### ○ 세부내역

- 활동비 지급 : 2만원/1회×2회/월×8개월×100명 32,000천원
- 발대식 행사 개최 : 3,000천원×1식 3,000천원
- 단체상해보험 가입 : 50천원×100명 5,000천원

※ 지역별 세대수(150세대 미만) 및 모기 제로 서포터즈 위촉 인원(예정)

(단위:세대/명)

구분	동 별	합 계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구분	세대수	117,496	3,220	6,510	5,335	4,865	5,217	2,515
	세대비율	100%	2.7	5.5	4.5	4.1	4.4	2.1
	위촉인원	100명	3	6	5	4	4	2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6,745	3,572	6,510	4,747	11,340	7,567	4,042	5,570
	5.7	3.0	5.5	4.0	9.7	6.4	3.4	4.7
	6	3	6	4	10	6	3	5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2,985	7,332	3,572	4,865	9,565	3,925	3,690	3,807
	2.5	6.2	3.0	4.1	8.1	3.3	3.1	3.2
	3	6	3	4	8	3	3	3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질 의 :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주민방역단의 역할과 기존 새마을방역방역단과 예산 지원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 답 변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주민방역단’은 ‘주민 모기제로서포터즈’ 사업으로 기존 새마을방역단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조문에서 용어를 통합하여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 7. 토론 요지

- 개정 취지에 맞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각 항 및 각 호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보완하고, 관련 문구와 용어를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403호

발의일자 : 2024. 10. 14.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각 항 및 각 호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하고 관련 문구와 용어를 수정함

## 2. 수정내용

- 집행의 혼선과 애매함을 없애도록 방역단 용어를 수정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방역단의 임무, 준수사항 및 방역단에 대한 지원 등 근거 관련 조문을 개정 취지에 맞고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함(안 제22호제2항 및 제2항제1호~제5호, 제3항 및 제3항제1호~제4호, 제4항 및 제4항제1호~제6호, 제5항 및 제5항제1호~제3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을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주민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방역을 위한 홍보”를 “관리를 위한 방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방역사업 추진”을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서식지 감시·신고·제거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활동

- ③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사업계획서
2. 활동내역서
3. 추진실적 보고서
4. 정산내역서

제22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활동비
2. 의료·방역 물품
3. 상해보험가입비
4. 작업복 구입비
5. 감염병 교육 및 기술이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자율방역단에”를 “주민자율방역단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의 관리·보관·사용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제22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
2.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방역약품 표식 부착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2조(자율방역단)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할 <u>자율방역단</u>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2조(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 ① ----- ----- <u>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u>-----.</p> <p>② 제1항에 따른 <u>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홍보 활동</u></p> <p>2. <u>해충 서식지 감시 및 방역 활동</u></p> <p>3. <u>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u></p>	<p>제22조(주민자율방역단) ① 구청장은 <u>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주민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u></p> <p>② <u>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u></p> <p>1. <u>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u></p> <p>2. <u>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 조치 및 서식지 감시·신고·제거</u></p> <p>3. <u>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u></p>

<신 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방역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약품
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신 설>

<신 설>

<신 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현행 제1호과 같음)
2. (현행 제2호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방역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명시된 지원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활동내역서

3. 추진실적 보고서

4. 정산내역서

④ 구청장은 주민자율방역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을 위한 물품 및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3항-----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활동비

2. 의료·방역 물품

3. 상해보험가입비

4. 작업복 구입비

5. 감염병 교육 및 기술이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의 관리·보관·사용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

2.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방역약품 표식 부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자율방역단)”을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주민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활동비
- 2. 의료·방역 물품
- 3. 상해보험가입비
- 4. 작업복 구입비
- 5. 감염병 교육 및 기술이전
-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 2.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서식지 감시·신고·제거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2조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자율방역단에”를 “주민자율방역단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을 “주민자율방역단”으로,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계획서
2. 활동내역서
3. 추진실적 보고서
4. 정산내역서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의 관리·보관·사용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
2.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방역약품 표식 부착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울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  
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  
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강남구 내 방역 취약지 분석 및  
보고

<신 설>

<신 설>

3. 상해보험가입비

4. 작업복 구입비

5. 감염병 교육 및 기술이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자율방역단-----  
----- 서류-----  
-----  
-----  
--.

1. 사업계획서
2. 활동내역서
3. 추진실적 보고서
4. 정산내역서

⑤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의 관리·보관·사용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
2.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방역약품 표식 부착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3
----------	-----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 의 자 : 김광심·이동호·이도희·  
우종혁·김현정·한윤수·  
복진경·강을석·윤석민  
의원(이상 9인)

### 1. 제안이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방역단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방역단 신설 및 임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항)
- 나. 주민방역단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위임법령 등 작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자율방역단)”을“(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율방역단”을 “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홍보 활동
2. 해충 서식지 감시 및 방역 활동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방역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명시된 지원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을 위한 물품 및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주요임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고 인정하는 경비

⑤ 제3항-----  
-----  
-----  
-----.

1. ~ 3. (현행과 같음)